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6조제1항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영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또는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각각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1.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2.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제57조제1항 중 “영 제76조제6항 또는 제90조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을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를 “영 제76조제5항제5호, 제90조제4항제5호 또는 제91조의3제6항제5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전단부터 같은 항 제3호 전단까지 중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각각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제62조제1호 전단 중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을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제3장제4절제2관(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제70조(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1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 한다)에서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일체
2. 전국단위 모집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해당하고 교육감이 자문

을 위하여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① 영 제82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
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 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 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교
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
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①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천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②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유
2. 재정 운영 상태
3. 위기 극복 대책
4. 재정 지원 요청액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정상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

다. 이 때 “지정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로 본다.

제82조 중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제정 당시 시범 운영 중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교육감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법인전입금 기준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절 <u>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u>	제4절 <u>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u>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u>영 제76조제1항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① ---- --- <u>영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또는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 ----- ----- ----- ----- ----- 1. <u>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u> 2. <u>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u> ② ----- -----

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2.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 (생략)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또는 제90조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

1. -----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2. -----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

3. (현행과 같음)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 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 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 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 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 된 <u>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 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u> 의 사본 2. <u>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u> 관련 서류 일체 3. <u>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 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u> 4. (생 략)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	② ----- ----- ----- ----- ----- ----- -----. 1. ----- ----- -- <u>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 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u> ----- -- 2. <u>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u>----- ----- 3. <u>영 제76조제5항제5호, 제90조 제4항제5호 또는 제91조의3제 6항제5호</u>----- ----- ----- ----- ----- 4. (현행과 같음)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① -----
--	---

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 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

-----.

1.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

2.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

3. -----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

②·③ (생략)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 동의: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생략)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일반 중학교·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

-----.

1. -----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
-----.
-----.

2. (현행과 같음)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제70조(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1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 한다)에서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일체

2. 전국단위 모집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해당하고 교육감이 자문을 위하여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신 설>

사본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① 영 제82조 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 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 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①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천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

<신 설>

<신 설>

인전입금기준) ① 영 제91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②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

<신 설>

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유
2. 재정 운영 상태
3. 위기 극복 대책
4. 재정 지원 요청액

<신 설>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
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
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
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
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
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82조(시·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u>의 지정·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u>정상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때 “지정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로 본다.</u> 제82조(시·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 ----- <u>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 -----.
---	--